

전주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49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김호민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4. 23.

판 결 선 고 2021. 5. 14.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B이 2019. 10. 24. 전북 완주군 C 답 1,476㎡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8.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101874호로 마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B이 2019. 10.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1,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회사는 2014. 9. 15.경 B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108498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5. 'B는 D회사에게 양수대출금 원금 25,246,12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을 2015. 7. 3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 26. 위 기금으로부터 위 판결원리금채권 등 일체를 양수하였고, 같은 해 4. 19. B에게 그 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다. 한편 B는 1986. 5. 7.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대여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1999. 6.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E인 근저당권을 마쳐주었다.

라. 그러던 중 B는 2019. 10. 2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2,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9. 10. 28. 접수 제10187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함)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B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로 1,030만 원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E에게 B이 부담하고 있던 대여금채무 1,47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줌으로써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은 2019. 10. 28.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원고에 대한 위 판결원리금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책임재산이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유일한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처분하였는데, 이는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는 물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됨에 따라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공동담보로 될 수 있었던 1,300만 원(= 매매대금 2,500만 원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판단

민법 제406조가 정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B이 새롭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F단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B이 새롭게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피고와 B의 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동기와 경위, 매매대금의 액수, 매매대금 지급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채무자인 B은 물론 수익자인 피고에게도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처분됨으로써 B의 적극재산이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분에 상응하는 만큼의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고, 이에 따라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역시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역시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나 그 후 현재까지 B이 원고 외에 다른 대출기관 등에 다른 채무를 연체하고 있던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전주시 완산구 G 대 4㎡를 소유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B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책임재산은 아니었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치봉